
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68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1.

발 의 자 : 백혜련 · 홍기원 · 손 슌
전용기 · 한준호 · 박상혁
강준현 · 백선희 · 이재강
이수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재정적 부담,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.

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·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(안 제22조).

법률 제 호
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 중 “필요”를 “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”로, “협회”를 “협회 또는 지방자치단체(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에 한한다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2조(국유재산의 무상 대여) 국가는 <u>필요</u>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<u>협회</u>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.</p>	<p>제22조(국유재산의 무상 대여) -- -----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----- ----<u>협회 또는 지방자치단체</u> (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·운영 하려는 경우에 한한다)----- -----.</p>